

14. '98세법 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

자료제공 : 재정경제부

1. 국제기준에 따라 경비처리기준을 재정비하고 증빙요건을 강화한다는 데 그 내용은?

- 현재는 손비로 인정되는 경비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 인건비·복리후생비·여비·해외시찰비·광고선전비·접대비 등 각종 경비의 요건 및 손비인정범위 등이 법령·통칙 등에 걸쳐 방만하게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미국등 선진외국에서와 같이
 -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지출되도록 경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 개별 경비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비용의 손비처리를 방지하고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 개별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및 규칙에서 규정
- 또한, 현재 법인의 경비지출증빙은 특별한 제약이 없으나
 -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와 같이 거래 상대방의 확인이 가능한 증빙만 인정하고
 -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영수증은 소액거래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음
 - 다만, 이 경우 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이 손비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 증빙불가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됨

2. 이번 조치에 따라 경비지출증빙으로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영수증의 구체적 범위는? 그리고 그 불이익의 내용은 무엇인가?

◦ 경비지출증빙으로 사용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영수증의 범위

-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
- 금전등록기 영수증
- 기타 각종 영수증(승차권등)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①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불이익의 내용

- 5만원 이상 접대비지출의 경우 : 필요경비(소비)로 인정되지 않음
- 10만원 이상 경비지출의 경우(접대비 제외) : 필요경비(손비)로는 인정되나 「증빙불비가 산세」가 부과됨

※ 증빙불비가산세 :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증빙수취금액 × 10%

3. 기밀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의무를 강화한다는 데 그 내용은?

◦ 지난해 접대비제도를 개선하면서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손비인정한도를 대폭 축소한 바 있음

- 기초금액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수입금액 기준

	'98년	'99년	2000년
100억	0.3%	좌동	0.2%
500억	0.2%	0.15%	0.1%
500억 초과	0.06%	0.04%	0.03%

- 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접대비중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밀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는바
 - 99년에는 현행 한도액(접대비의 20%)의 1/2 수준인 접대비 한도액의 10%로 줄이고
 - 2000년부터는 완전 폐지하여 접대비는 모두 지출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되도록 하였음
- 한편, 접대비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 또는 지출지역에 따라 50%(군지역)~80%(서울시)까지 신용카드(세금계산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 앞으로는 5만원이상 접대비는 신용카드(세금계산서)로 사용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음

*99년에는 기밀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 이와함께 2000년전부터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인상되는 모집권유비를 폐지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였음

4. 기업이 보유하는 회원권·승용차의 손비인정을 제한하고, 종업원에 대한 저리자금대출을 억제한다는 데 그 내용은?

-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규제제도를 두고 있음

예)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시 차입금이자 및 유지비 손비부인등
- 다만, 헬스클럽 회원등 개인 사용이 전속되는 회원권은
 - 출자임원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 앞으로는 모두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당해 회원권가액 상당 차입금이자 및 유지비를 손비부인하도록 하였음
- 승용차의 경우에도 기업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 실제 임직원등이 사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일반 유지비는 종전대로 손비인정하되,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감가상각비에 한하여 80%만 인정하도록 하였는 바
 - 이 경우에도 추후 당해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등에는 그간 손비로 인정되지 않았던

감가상각비 부분이 손비로 인정됨

- 기업이 종업원에게 무상·저리로 주택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현재 2,000만원까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황을 감안할 때 이와같은 제도가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 금융기관등 일부 업종의 기업들만 혜택을 보고 있어 앞으로는 정상 이자율과의 차액상 당액은 익금으로 과세하도록 한 것임
 - 다만 이경우에도 기존 융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음

5.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데 그 내용은?

- 현재 기업이 주주나 계열사등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그 거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주로 형식적인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되어 있음
 - 1% 이상 출자자
 - 임원·사용인등
 - 출자자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등
- 따라서, 직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간접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경우 등에는
 - 현행 기준상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어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와같은 점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 기업집단의 계열법인 및 사실상 지배자와 그 친족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 이번 상법개정에서 공식 이사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당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

사하는 명예회장, 기획조정실장등에 대해 사실상의 이사로 보는 제도가 도입되었는 바

- 이들도 모두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변칙·부당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6. 무상주 분배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제도가 바뀐다는 데 그 내용은?

- 기업이 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는

- 사업 등 손익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 잉여금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방법과
- 주식발행초과금등 자본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배당하는 방법이 있음

- 현재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현금배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으로 과세되고

-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 그 재원이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대상인 손익거래를 통하여 조성된 이익 잉여금이라는 점에서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

- 그러나,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분배하는 경우에는 현재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 그 재원이 되는 자본잉여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이나 감자차익등 순수 자본잉여금의 경우를 제외하고

- 자산 수증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재평가적립금(1% 과세분)과 같은 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이익잉여금과 같이 손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금액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무상주를 분배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과 동일하게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점에서 이를 추가하게 된 것임

- 이와함께 합병·분할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시기에 따라 과세상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였음

7. 불성실 신고기업에 대한 각종 가산세가 강화된다는데 그 내용은?

- 현재 법인에 대한 대표적인 가산세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가 있는 바
 - 앞으로는 고액을 신고누락하거나, 분식회계등을 통한 부당한 과표누락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 중과하기로 하였음
- 먼저,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 현재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고 있으나
 - 무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로 인상하였음
-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 현재 그 내역에 관계없이 산출세액의 10%를 부과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10%로 하되
 - 분식회계등을 통해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경우 그 금액은 20%로 인상하고
 - 특히, 소득의 1/3이상을 누락하고,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30%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 무납부가산세의 경우
 - 납부기한을 1일이라도 경과하면 무조건 10%를 부과하는 제도는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 미납부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가산세율은 현행 1일 0.04%(14.6%)에서 1일 0.05%(연 18.2%)로 인상하여
 - 가산세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아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음

8.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벤처기업의 범위는?

-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임
-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기업
- 당해기업의 직전사업연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 다음의 권리 또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 특허권 ·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
 - 특허등록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발전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등을 영위하는 기업

9.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이유,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대책은?

- 기업구조조정의 본격적인 추진 및 기업의 대량 부도사태등으로 중고설비의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기업의 투자기피, 중고설비 유통시장의 미발달 및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등으로 인하여 중고설비에 대한 수요가 미미한 실정임
- 이번 개정안에서 제조업의 중고설비투자에까지 투자세액공제(3%, '99년말까지 취득분에 한정)를 허용한 것은
 - 중고설비의 사장 · 폐품화를 방지하고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
- 다만,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에 있어서 동일 자산에 대한 중복공제의 가능성이 있어
 - 3년내 재판매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등 악용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10. POS 시스템 구입시의 세제지원 내용은?

- 현재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체인 사업자 및 대규모점포 등

특자가

- '98. 12까지 POS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 Point of Sales)을 구입할 경우
 - POS시스템 구입금액의 5%를 범인세 ·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 *체인사업자 :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를 운영
 - 대규모 점포 : 동일 건물 안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의 집단
- 이번 개정안에서는 POS 시스템 도입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 적용기한 연장을 2000년 말까지 연장하고
 - 대상범위에 중소유통업자를 추가하였으며
 - 투자세액공제율도 5%에서 10%로 인상하였음

11.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강화 내용은?

- 현재도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물류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과 같이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허용하는 등 제조업에 준한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음
 - 다만, 유사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효과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도 고부가가치산업육성 차원에서 감면이 허용되도록 감면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추가업종대상 : 영화제작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수제공업, 포장 및 충전업, 그래픽 디자인업
 - 지원 범위 :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및 기술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허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사항임

12. 위탁생산방식에 의한 반도체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은?

- 현행 세법상의 업종분류는 세법에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

르고 있으므로

- 위탁생산업체가 제조업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에 규정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기업에 한함)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일 것」
- 따라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설계도면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하는 주문형 반도체 업체는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하는 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 중소제조업체에게 적용되는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설계도면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한 것도 실질적인 제품생산으로 인정하여
 - 위탁생산에 의한 주문형 반도체 업체의 조세감면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음

13.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소득세·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도입취지와 성실신고자의 기준은?

- 영세사업자들은 과거 불성실신고에 대한 조사나 성실신고시 급격한 세부담증가를 우려하여 실제 매출액대로 신고하기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 이들 사업자들이 실제 매출액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급격하게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여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성실신고의 기준은 영세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수준,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할 예정임
 - 다만, 동 제도는 실제에 가까운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예외적인 지원제도이므로
 - 이번에 소득세법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간편장부등 최소한의 기장은 유지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예정임

14. 성실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제도 예시

<현황>

- 업종 : 음식·숙박업
- 수입금액 및 산출세액 신고현황

	98 귀속	99 귀속	2000 귀속	2001 귀속
수입금액	5천만원	8천만원	1억원	1억2천만원
산출금액	2백만원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 경감기준율 : 국세청장이 전기대비 40%로 확정 고시
- 매년 업종별 수입금액 증가율 : 10%

<경감제도 적용여부 판정 및 세액 계산>

 1999년 귀속분

- 경감여부 판정 :

신고금액(8천만원)이 경감기준율 반영금액(7천만원=5천만원×140%)을 초과하므로 경감 대상으로 판정

- 경감대상 수입금액

$$8,000\text{만원}(\text{신고금액}) - 5,000\text{만원} \times 110\% = 2,500\text{만원}$$

$$\text{경감세액} = 500\text{만원} \times \frac{2,500\text{만원}}{8,000\text{만원}} \times 100\% = 1,562,500\text{원}$$

 2,000년 귀속분

- 경감여부 판정 :

신고금액(1억원)이 기준년도 수입금액 신고금액(8천만원)과 업종별 수입금액 증가율을 반영한 금액(8,800만원)중 작은 금액보다 크므로 세액경감 계속 적용
 (*업종별 수입금액 증가율을 반영한 금액 : 8천만원×110% = 8,800만원)

- 경감대상 수입금액 : 2,500만원(1999년 귀속분과 동일)
- 경감세액 : $700\text{만원} \times \frac{2,500\text{만원}}{10,000\text{만원}} \times 50\% = 875,000\text{원}$

□ 2,001년 귀속분

- 경감여부 판정 :

신고금액(1억2천만원)이 기준년도 수입금액 신고금액(8천만원)과 업종별 수입금액 증가율을 반영한 금액(9,680만원)중 작은 금액보다 크므로 세액경감 계속 적용
 (*업종별 수입금액 증가율을 반영한 금액 : 8천만원 $\times 110\% \times 110\% = 9,680\text{만원}$)
- 경감대상 수입금액 : 2,500만원(1999년 귀속분과 동일)
- 경감세액 : $1,000\text{만원} \times \frac{2,500\text{만원}}{12,000\text{만원}} \times 20\% = 416,667\text{원}$

15.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부가가치세 감면방법이나 추가적인 혜택은?

-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 직전기 과세표준에 업종별성장을 등을 감안한 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그 첫해에는 동 매출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등 3년간에 걸쳐 감면하도록 할 예정이며
 -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자료상 조사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 다만, 동 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세금감면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감면기간중 지속적인 성실신고가 담보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 전기 신고금액(업종별 성장률이 전기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비율을 고려한 금액) 보다 하회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부터는 경감을 배제하도록 할 예정임

경감세액 계산사례

<현황>

- 업종 : 음식·숙박업(현행 부가가치율은 50%임)
- 신고현황('99년 1기 현재 간이과세자인 경우)

'98.1기	98.2기	99.1기	99.2기	00.1기	00.2기	01.1기	01.2기
2,500억 원	3,000	5,000	7,000	9,000	1억 원	1.2억 원	1.4억 원

- 경감기준율 : 국세청장이 전기대비 30%로 초과신고로 가정
- 각 과세기간의 당해 업종의 1과세기간당 과표신장을 : 10%로 가정

계산사례

□ 99년 1기분

- 경감대상 여부

3,900만 원($=3,000\text{만 원} \times 130\%$)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경감대상 사업자임

- 경감대상 과세표준

5,000만 원(신고과표) - $3,000\text{만 원} \times 110\% = 1,700\text{만 원}$

- 당초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에 해당

$5,000\text{만 원} \times 50\%(\text{부가가치율}) \times 10\% = 250\text{만 원}$

- 경감세액의 계산

$\cdot 1,700\text{만 원}(\text{경감대상 과표}) \times 50\%(\text{음식·숙박업의 부가율}) \times 10\% = 85\text{만 원}$

- 납부세액의 계산

$250\text{만 원} - 85\text{만 원} = 165\text{만 원}$

□ 99.2기

- 신고과표(7,000만 원)가 전기과표(5,000만 원)와 전기과표에 기당평균 과표신장을(1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5,500만 원)중 적은 금액(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계속 경감규정

적용

- 경감금액은 99.1기와 동일

□ 2000.1기

- 신고과표(9,000만원)가 전기과표(7,000만원)와 전기과표에 기당 평균과표신장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7,700만원)중 적은 금액(7,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계속 경감규정 적용
- 경감금액

1,700만원(경감대상과표, 최초 성실신고금액) \times 50%(음식·숙박업의 부가율) \times 10% \times 50%(2년차 경감율)=42.5만원

- 납부세액

450만원(=9,000만원 \times 50% \times 10%)-42.5만원=407.5만원

□ 2001.2기

- 신고과표(=1.4억)가 전기과표(=1.2억)와 전기과표에 업종별 평균과표신장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1.32억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므로 계속 경감규정 적용
- 경감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 당해 사업자는 2000년 1역년의 매출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에 해당

- 납부세액-경감세액

= $(1.4\text{억 원} \times 10\% - \text{매입 액} \times 10\%) - 1,700\text{만 원} \times 50\%(\text{부가율}) \times 10\% \times 20\%(3\text{년차 경감율})$

16. 유통업소등 봉사료 원천징수에 대한 구체적 계산사례

사례 1)

- 음식 대 : 100만원

- 봉사료 : 30만원

- 원천징수 여부 : ○

- 봉사료(30만원)가 유통업소 매출액(음식 대)의 20%(20만원)를 초과하므로 유통업소 사업주는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 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에 봉사료와 음식대를 구분 기재한 경우에 한함
 -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 15,000원
 - 30만원(봉사료 수입금액)×5%(원천징수 세율)

사례 2)

- 음식대 : 100만원
- 봉사료 : 15만원
- 원천징수 여부 : ×
 - 봉사료(15만원)가 유통업소 매출액(음식대)의 20%(20만원)이하이므로 유통업소 사업주는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 없음

17. 경정조사 등에 의하여 추가적인 적출금액이 있는 경우 과세유형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의할 경우
 - 납세자가 신고에 의한 1년간의 매출금액이 4,800만원 또는 1억 5천만원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7월~12월)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되나
 - 예1) '96년분의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7년 2기분부터 간이과세 적용
 - 경정조사 등에 의하여 추가로 매출액 누락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조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계속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예2) 과세특례자에 대하여 '98년 7월에 96년분에 대한 경정조사를 하여, 96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98년까지 계속 과세특례적용후 99년부터 과세유형 변경
- 따라서 현재의 재도는 성실신고자에 대해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정조사 등에 의하여 매출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 동 변경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조사 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제2과세기간부터는 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과세유형을 변경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예3) 예2의 경우에 있어, '97년 2기분부터는 간이과세에 의하여 세액을 부과 또는 추징

18. 현재의 과세특례등 소규모사업자 과세제도 배제기준은 어떠한 내용이며 개정내용은?

- 현재 소규모사업자 적용 배제기준은 2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음
- 첫번째는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경우등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종별로 소규모사업자 과세제도를 배제하는 것으로
 - 이는 신규사업자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기준임
 - 간이과세 배제업종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 과세특례 배제업종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홍장소, 광역시 이상 지역의 부동산 임대업
- 다른 하나는 사업지역,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예) 일용잡화 소매업 과세특례 배제기준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E 지역
16.5m'이상	33m'이상	33m'이상	49.5m'이상	49.5m'이상

※ A지역 : 종로, 광화문, 개포, 양재세무서 등

- 이번의 개정안은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을 계속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 불성실신고에 의한 소규모사업자 과세제도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19.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방식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하는데
포괄주의와는 무엇이 다른가?

- 자본거래 등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완전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으나,

-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반한다는 측면, 조세행정의 재량권 확대, 조세법률주의와의 문제로 인한 위험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항임
- 완전포괄주의로 가는 대신 정부는 현행 열거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일부 보완하여
 - 현행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제유형과 유사한 변칙적인 경제적 이익등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직접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새로운 유형의 특수관계자간 경제적 이익 등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여의제 과세범위를 확대하였음

※ 현행 법체계에서는 법에서 정한 증여의제유형과 유사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실권주, 신종사채 등)

<참고>

증여세 과세방식 비교

현행(열거주의)	개정안(열거주의 보완)	완전포괄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과세대상(법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현행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모든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재산의 범위(법 §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현행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이익을 증여재산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의제 과세대상(법 §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질적인 증여외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이나 권리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경제적 이익</u>을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의제” 개념이 불필요 함 (증여의제→증여)

현행(열거주의)	개정안(열거주의 보완)	완전포괄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의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거적 규정 (법 § 33~ § 41) - 기타이익의 의제(법 § 42) · <u>법에서 열거한 증여의제 와 유사한 특수관계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의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유지> - 기타이익의 의제 (법 § 42 개정) · <u>법에서 열거한 증여의제 와 유사한 거래는 직접 과세(신설)</u> · <u>이외의 특수관계자간 재산이나 권리, 이익등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보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의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적 규정 (법 § 33~ § 42) (증여의제→증여)

20.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과세대상자와 과세방법은?

- 과세방법은 현행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 신고·납부방법을 준용하게 됨
 - 즉, 대주주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내내 1%이상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잔금청산일,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고
 - 예정신고 기한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5.1~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됨
- 보다 상세한 사항은 향후 시행령에 규정해 나갈 예정임

21. 등록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와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의 폐지로 부동산 거래단계 및 자동차 취득단계의 세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 부동산 취득단계의 과세완화(5.8%→5%)

- 시행시기 : 2000. 1. 1

현 행	개정
◦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 취득세분 농특세 : 0.2%	◦ 농특세 폐지
◦ 등록세 : 농특세 : 0.3%	◦ 등록세 : 취득가액의 3%
◦ 등록세분 교육세 : 0.6%	◦ 교육세 폐지
◦ 합계 : 취득가액의 5.8%	◦ 합계 : 취득가액의 5%

◦ 자동차 취득단계의 과세완화(8.2%~7%)

- 시행시기 : 1999. 1. 1

현 행	개정
◦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 취득세분 농특세 : 0.2%	◦ 농특세 폐지
◦ 등록세 : 농특세 : 5%	◦ 등록세 : 취득가액의 5%
◦ 등록세분 교육세 : 1%	◦ 교육세 폐지
◦ 합계 : 취득가액의 8.2%	◦ 합계 : 취득가액의 7%

22. 지방소득세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현행 소득할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에 덧붙여서 부과·징수되므로 납세자에게 이중의 납세부담을 지우므로,

- 이를 소득세에 통합하여 국가가 부과·징수 등의 일체의 절차를 행하되, 징수된 소득세의 100분의 10은 해당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함.
- 이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98. 2)한 소득할주민세와 소득세·법인세의 통합 징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임.

※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조세체계 간소화 과정에서 교육세·농특세의 지방세흡수 등에 따른 국가와 지방간의 재원조정을 위해 법인세에 통합하고, 전액 국세로 함.

◦ 현행 : 소득할주민세

- 과세표준 : 소득세·법인세액
- 세율 : 105
- 부과·징수 : 지방자치단체

◦ 개정 : 지방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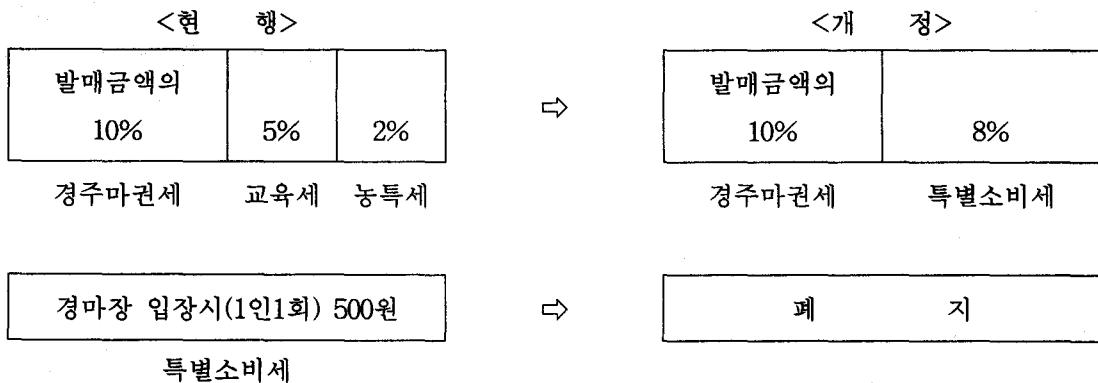
- 부과·징수 : 소득세에 포함되어 국가(세무서)가 부과·징수
- 귀속 : 수납기관에서 납부된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시·군에 이체

23. 담배와 경주마권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신규과세하면, 이에대한 세부담이 커지고,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

- 현행 담배소비세액에 교육세가 부가되는 바, 교육세를 폐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특별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음.

<현 행>		<개 정>	
460원	184원		
담배소비세	교육세	담배소비세	특별소비세

- 현행 경주마권세액에 대하여 교육세 50%와 농특세 20%가 부가되는 바(경주마권 발매금액의 7%), 교육세와 농특세를 폐지하고 경주마권 발매금액에 대한 8%의 특별소비세로 전환하되, 경마장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세율 : 500원)를 폐지함.



24.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시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유럽 등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거래단계별 부가가치의 합계액이 최종가격이 됨
※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액×10% - 매입액×10%
-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새로이 부과할 경우 최종거래 가격의 10%(현재 부가가치세율)에 해당하는 가격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25. 조세감면규제법을 폐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 5년 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98년 말로 만료되는 것을 계기로
 - 현행 조세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조세지원 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조세감면규제법을 폐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은 조세지출 예산제도 도입등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조세감면체계 전반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 첫째, 일반법률등에 분산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규정을 단일 법률에 통합하고 조세특례 조항 뿐만 아니라 중과세조항도 함께 규정
 - 둘째, 조세감면의 만성화·기득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조세지원제도별로 일몰조항

설치

- 셋째, 조세감면 사전·사후 통제강화를 위해 조세감면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

26. 일반법률에 의한 조세특례제도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 현행 조세감면제도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뿐만 아니라
 - 해저자원광물개발법,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 이번 개정안에서 조세감면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주요 이유는
 - 첫째,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조세감면은 결국 국민 전체의 세부담 증가로 귀착되므로
 - 조세지원제도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조세지원제도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며
 - 둘째,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감면의 종류, 각종 신고서식)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 셋째, 조세감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내년부터 도입 추진중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27. 일몰규정 도입의 필요성 및 설정기준은?

- 이번 개정안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별 조항별로 일몰규정을 도입하려는 기본 취지는
 - 조세지원제도가 기득권화, 만성화되는 경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일몰규정을 두어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조세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하며
 - 아울러, 현재 추진중에 있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것임
- 일몰기한은 원칙적으로 단기 2년, 장기 5년의 2가지 종류를 설정하였는데

- 단기 2년은 기존 개별 한시제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세감면제도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최소한 2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으며
 - 장기 5년은 중기 경기순환 cycle에 맞추어 조세지원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설정하였음
- * 그리고 예외적으로 1년 또는 특정기한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현행 규정상 '99년말 시 한완료되는 조세지원과 적용기한의 설정이 부적절한 조세지원이 있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 구체적인 일몰기한 설정기준으로는
 - 현행규정상 '99년말에 적용시한이 종료하는 지원제도는 1년의 적용시한을 두고
 - 특정업종에 대한 지원제도중 형평성 시비가 제기되는 분야 및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원제도등에 대해서는 2년의 적용시한을 두며
 -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제도 및 지원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제도등에 대해서는 5년의 적용시한을 두 예정임
 - 이밖에 외환위기 해소에 필요한 조세지원제도 및 적용시한을 두는 것이 부적절한 조세지원제도는 일몰규정 예외인정도 허용할 방침임

28. 조세감면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의 구체적 실행방법은?

- 그동안 각부처로부터의 조세감면 요구는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등은 전무하여
 - 감면이 신설된 후에는 기득권화·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 이에 따라 세입기반이 많이 잠식되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 재경부는 연초 각 부처에 조세지원 기본계획을 통보하고
 - 각 부처는 재경부에 건의목적, 기대효과, 예상 세수효과 등 분석자료가 첨부된 조세감면건의서를 매년 5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 재경부는 건의사항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

도록 규정하였음

◦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 신규 조세지원제도, 시한이 만료되는 조세지원제도를 대상으로 주무부처는 조세지원효과, 자체평가의견 등을 적시한 조세감면평가보고서를 재경부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재경부내에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조세감면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음

29.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시기 및 준비상황은?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원의 내역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조세지원의 관리·통제를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임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만한 조세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하여 복잡해진 세제를 단순화하는 장점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농·어업 등 특정분야에 있어서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 등의 문제점도 예상되므로
 - 실제 도입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신중히 추진할 예정임
- 따라서 올해는 제도도입을 위한 사전준비에 주력할 예정인 바
 - 먼저, 주요 선진국의 제도도입 및 운용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조세지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 이를 위해 정확한 감면통계의 확보, 조세감면규모 추계방법 개선 등을 강구하며
 -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개별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일몰 조항 설치 및 사전·사후평가 의무화제도 도입등 조세지출 예산제도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할 예정임

30. 이번 법인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은?

- 현행 법인세법은 지난 67년 전문개정이후 30년간 잦은 부분개정으로 인하여 관련규정이 법령·통칙등에 걸쳐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간 학계·기업등으로부터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

- 따라서, 금년 법인세법개정은 세제를 간소화·명확화하여 납세자에게 쉽고 편리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전문개정을 통해 법인세법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기로 하였음
- 특히, 미진한 부문이었던 합병이나 상법에서 새로이 도입되는 분할등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 및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 국제기준에 따라 각종 경비의 손비처리원칙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수관계자와의 변칙·부당거래를 통한 기업자금 유출을 억제하여 경비지출의 적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 감가상각등 복잡한 각종 과세제도와 신고·납부절차등을 대폭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과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31. 준비금 및 충당금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 준비금 및 충당금제도는 당해 사업연도에 실제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 장래에 발생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금등을 적립하는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하는 제도임
- 이와같은 준비금 및 충당금제도는 과세소득의 조절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손해배상준비금제도와 같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는 폐지하고
 - 퇴직급여충당금제도는 금년부터 퇴직보험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는 등 사외적립제도가 확충된 점을 감안하여 단순한 사내 유보자금에 불과한 충당금의 한도를 축소하게 된 것임
- * 전원퇴직시 퇴직금 추계액의 50%→40%
- 다만, 대손충당금제도는 최근 기업들의 부도 증가에 따라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일반기업들도 실제 대손이 발생한 실적을내에서는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
 -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감독 규정에서 자산 전전성분류에 의한 표준비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그간 은행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표준비율에 의한 적립특례를 1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음

32. 공공법인제도가 폐지된다는 데 그 내용은?

- 지난 해까지는 공사·공단등 공공법인에 대해
 - 법인세율 적용에 있어 특례(16.25% : 일반기업은 16.28%)를 허용하였음
- 그러나,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을 폐지함에 따라 일반법인과 구분하여 운용할 세제상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세제를 간소화하기로 하였음
- 한편, 금년부터 접대비한도 적용에 있어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일반 기업의 70%만 인정하고 있으나
 - 공공법인제도의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그 대상을
 -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과
 - 그 투자·출자기관이 다시 출자한 회사중 투자·출자기관이 제1대 주주인 출자회사로 조정하여
 - 이들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유도하도록 하였음
- 이와함께 그간 단위 농·수·축협등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없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였으나
 - 접대비등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등 일반기업과 비교해 과세불형 평 문제가 있어 폐지하기로 하였음

33. 감가상각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 지난 94년 감가상각제도를 전면개편하면서
 - 세수문제등을 감안하여 개정규정은 95. 1. 1이후 취득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 * 94. 12이전 취득자산은 종전규정 적용

- 기업들이 94. 12이전에 취득한 자산과 95. 1. 1이후 취득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되어 계산이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왔음
 - 감가상각방법의 경우 유형고정자산을 예로 들면
 - 94년이전 취득자산은 정액법·정율법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 95년이후 취득자산은 건축물은 정액법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음
 - 내용연수의 적용에 있어서도
 - 94년이전 취득 자산은 개별 자산별(591개)로 법정화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 95년이후 취득 자산은 자산별·업종별 8개로 그룹핑하여 기준 내용연수의 25%(지방국 세청장 승인시 50%) 범위내에서 기업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자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되는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 가급적 '95년이후 취득자산의 방법으로 통일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발표할 예정임

34. 신고·납부상의 절차규정도 많이 간소화된다는는데 그 내용은?

- 먼저,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은
 - 결산확정일(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내)을 기준으로 하여
 - 일반법인은 15일내로 되어 있고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은 30일내로 되어 있음
- 이와같이 결산 확정일 및 외부조정여부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 모든 법인에 대하여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내로 통일하였음
- 또한, 현재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 앞으로는 세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법인등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소규모 법인의 경우 반기 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였음

35. 규제제도의 개선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 먼저, 대차대조표의 일간신문 의무공고제도의 적용대상을 외부 감사대상법인(자산 70억원 이상)으로 축소하였는 바,
- 동제도는 상법에서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그 취지도 이해관계자에게 공표한다는 의미이므로
- 모든 법인에 대해 세법에서 이를 강제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수준의 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임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도
 - 잉여금을 배당하는 기업과 배당하지 않는 기업간 과세형평을 위해 배당이 불가피한 상장기업을 제외한 대규모 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나
 - 협회등록법인도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제외하였음
-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제도는 그간 인위적이고 복잡한 판정기준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야기해 온 점을 감안하여
 - 세부판정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 다른 업무무관자산과 동일하게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서만 판정하도록 하였음
- 그밖에 2000년부터 과다차입금(자기자본 5배초과)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가 시행 되는 점을 감안하여
 - 현행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임야등의 취득제한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99년까지 1년간만 적용하도록 하였음

36. 거주자의 해외자산 양도소득에도 과세를 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국내 양도세 과세자산에 준하여 과세

과세대상	대상자산	세율	비고
• 외국소재부동산	토지 · 건물		
• 해외부동산상의 권리	지상권, 전세권, 부동 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0~40%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 해외유가증권	주식 · 출자증권	20%	국외증권거래소에 상 장된 경우도 과세

- 양도차익 및 산출세액의 계산

- 국내자산 양도소득계산을 준용하되,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하도록 함

37. 기술이전소득의 감면율을 조정하는 이유는?

- 특허권 · 실용신안권 또는 기술비법을 양도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 그 이전대상에 따라 차등하여 법인세 ·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 내국기업에게 양도 · 대여시 : 전액 면제

외국기업에게 양도 · 대여시 : 50%세액 감면

- 일부에서는 기술국수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 내국기업에게 기술이전할 경우에도 외국기업과 동일하게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참고로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 일본(외국기업에게 이전시에 한해 40% 소득공제)을 제외하고는 조세감면을 허용하는 사례가 없음

38. 세무사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 및 여타 자격사와의 충돌가능성은?

- 우선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심판대리권을 추가하는 것은
 - 공시지가가 소득세·상속세 등 대부분의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산정에 근거가 되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조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 현재도 세무사가 개발부담금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의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임
- 그리고 세무신고서류의 확인 및 증명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 세무사는 기장대리 및 기장에 의한 세무신고를 대행하므로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 당해 세무서류를 직접기장하고 신고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세무관련 서류의 확인 및 증명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상기 2가지 추가되는 직무는 사실상 세무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업무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 여타 자격사의 업무범위와 상충되는 것은 아님

주택회보